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93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인원 조정(안 제3조제1항)

-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

나. 위원회 구성 중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다. 심의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라. 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도록 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협조 요청
(서울시교통지도과 - 5072, 2014. 2. 2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과 이해관계자의 심의 참여 배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의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하고, 운수사업체 등 관련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그 동안 교통 불편사항 등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자인 운수사업체 등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저하 등 공정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협조 요청이 시달되어 위원회 심의 시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